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ERICA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3차 개정안)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2.06.) ■ 부분 개정 [제139차 감염병 관리위원회(2021.02.23.(화))]
 ■ 3차 개정안 [제181 감염병 관리위원회(2021.06.29.(화)) 및 [제183 감염병 관리위원회(2021.07.06.(화))] * 배포 : 정부 거리두기 단계 변경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ERICA 사회적 거리두기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역제 단계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수 업		대면·원격(비대면) 수업			※ 원격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수업	원격 수업(전면)	
중간·기말 시험		대면·원격 시험(병행)			※ 원격 시험 - 불가피한 경우 대면시험	원격 시험(전면)	
회의·집합·모임·행사*	부서장 승인	- 실내 1~99명 - 실외 1~199명		- 실내·외 1~39명	- 실내·외 1~19명	▶ 행사: 불허 ▶ 모임: 감염위 승인 - 실내·외 1~4명	
	감관위 승인	- 실내 100~499명 - 실외 200~499명		- 실내·외 40~99명	- 실내·외 20~49명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외 50인 이상 금지		
대관행사		부서장 승인	- 실내 1~99명 - 실외 1~199명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회의·집합·모임·행사 단계별 기준에 맞춰 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제팀) 2. 국가 및 공공기관의 시험(행사)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제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제팀) 3.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감관위 승인	- 실내 100~499명 이상 - 실외 200~499명 이상				
단과대학 행정팀 관리 운영 시설물 (실습실, 독서실, 자유열람실, 오픈스페이스)		허용 가능 허용 여부, 운영시간 및 운영 관리는 단과대학장에 의해 결정하나 반드시 감염병 관리위원회에 개방 사실 공지			불허		
행정실		정상 근무		정상 근무 (유연 근무 권고)	1/2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대학원 연구실		정상 근무		정상 근무 (유연 근무 권고)	1/2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ERICA 학술정보관 (학기중)	주중		▶ 일반열람실 : 08:00~24:00 / ▶ 자료열람실 : 09:00~17:00			▶ 일반열람실 : 08:00~22:00 ▶ 자료열람실 : 09:00~17:00	휴 실 (무인 반납만 허용)
	주말		▶ 일반열람실 : 08:00~24:00 / ▶ 자료열람실 : 휴실			▶ 일반열람실 : 08:00~22:00 ▶ 자료열람실 : 휴실	
	중·기말고사	주중	▶ 일반열람실 08:00~24:00 (2개실 24시간 개방) ▶ 자료열람실 : 09:00~17:00			▶ 일반열람실 : 08:00~22:00 ▶ 자료열람실 : 09:00~17:00	휴 실 (무인 반납만 허용)
		주말	▶ 일반열람실 08:00~24:00 (2개실 24시간 개방) / ▶ 자료열람실 : 휴실			▶ 일반열람실 : 08:00~22:00 ▶ 자료열람실 : 휴실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운영시간 제한×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발열검사		유인검사 또는 무인검사					
인조잔디축구장·풋살장·대운동장		10:00~22:00		10:00~20:00	운영 중단		
		※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농구장 사용 불가					
학생자치시설 (학생회실, 동아리실)	동아리	조건부 개방 (주관부서 보고)		폐쇄 (부득이한 사정시 주관부서 승인하에 사적모임 제한수준에서)	폐쇄		
	학생회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공통사항 : 단계별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③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④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⑤ 손소독제 비치 ⑥ 환기 및 소독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중대본) ①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② 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④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 시설 운영중단 명령 (대 학) ⑥ 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 고발 ⑧ 확진자 발생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 시설운영 중단